

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축산업 및 축산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,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맞추어 조문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 제한할 근거 마련(안 제6조의2 신설)

나.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2조, 제15조, 제16조)

- (현행)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(개정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- (현행)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
(개정)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(현행)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
(개정) 「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다. 위촉직 위원 위촉시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(안 제11조)

3. 조 례 안 : 불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축산법」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불임)

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2호, 제3호 및 제6호 중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지원대상) ①시장은 관내에 축산관련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축산법」,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, 벌칙을 받은 경우

2.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 중에서 위원장이”를 “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중 “축산담당”을 “축산진흥담당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, 절차,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
1. “축산업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.	1. ----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.
2. “농업인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	2. ----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.
3. “생산자단체”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	3. ----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.
4. ~ 5. (생략)	4. ~ 5. (현행과 같음)
6. “축산물”이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 「축산법」 제2조제3호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	6. ----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7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11조(협의회 구성) ③ 당연직
위원은 시의 축산과장, 기술개
발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위원은
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
이 위촉한다.

제14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
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
1인을 둔다

제6조의2(지원대상)①시장은 관내
에 축산관련 사업장을 두고 관
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업에
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
지원을 할수 있다.

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
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
을 제한 할 수 있다.

1. 「축산법」, 「가축전염병예방
법」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
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
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
거나, 벌칙을 받은 경우

2.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
지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
제11조(협의회 구성) ③ -----

-----사람 중에서 위원장
이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에 경
우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
21조제2항에 따라 ----.

제14조(간사) ①-----

② 간사는 <u>축산담당</u>이 된다. 제15조(수당 및 여비)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하여「구미시 각종 위 원회 <u>실비변상 조례</u>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 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구미시 재 <u>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	② ----- <u>축산진흥담당</u>----- 제15조(수당 및 여비) ----- -----「구미시 각종 위 원회 <u>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</u>」----- -----. 제16조(준용) ----- ----- -----「구미시 예산 및 <u>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 -----.
--	--

관계법령

□ 「축산법」

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·육성, 축산환경 개선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·이용촉진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

부칙 <법률 제13383호, 2015. 6. 22>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”을 “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”으로 한다.

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생략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소 관 부 서		축 산 과
입 안 자	과 장	손 이 석
	담 당	전 호 진
	담 당 자	백 창 훈 (480-5813)